

의안번호	2211983
의 퇴 인	문진석의원
회 답 일	2025.9.12.
추계번호	25D421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57억 1,100만원, 2031년 1,313억 4,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,039억 8,100만원(연평균 1,007억 9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 (안 제12조의2제4항)	75,711	85,808	98,074	113,043	131,345	503,981	100,796

주: 1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(안 제12조의2제4항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1곳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2제4항 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신설	시장 등은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하여 다음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 - 노인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- 속도 제한 등에 관한 안전표지 -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방지시설 - 방호울타리 등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2조의2제4항 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1곳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이때,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으므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60개소(2024년 말 기준, 경찰청 자료)는 제외하기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1곳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 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비율을 가정하여 설치 수량을 산정하고 1개소당 설치 비용을 곱하여 산출
 - (설치 수량) 2027년 1,477개소, 2031년 2,367개소로 추정
 - 추계기간 동안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수를 추정한 후, 2026년 말 기준 기 지정된 보호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신호기는 5년 이내에 설치 완료
 - 2027년부터는 신규로 지정되는 보호구역 수만큼 설치
 -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 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비율은 60%²⁾

[표 2] 설치 수량 추정: 2024~2031년

(단위: 개소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수	4,206	5,089	6,158	7,451	9,016	10,909	13,200	15,972
기 지정된 보호구역(a)	-	-	-	1,160	1,160	1,160	1,159	1,159
신규 지정된 보호구역(b)	-	-	-	1,293	1,565	1,893	2,291	2,772
설치 수량(=(a+b)×60%)	-	-	-	1,477	1,641	1,839	2,078	2,367

주: 1.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말 기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수는 4,206개소이고 최근(2020~2024년) 평균 증가율 21%를 적용하여 연도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수 추정
 2. 기 지정된 보호구역(2026년 말 기준 6,158개소에서 이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360개소를 제외하면 5,798개소)에는 5년 이내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고, 신규 지정된 보호구역(전년대비 증가한 보호구역 수)에도 설치
 3. 기 지정된 보호구역의 설치 수량의 합계를 5,798개소로 맞추기 위하여 2030년과 2031년 수량 조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공공데이터포털의 '전국횡단보도표준데이터'에 보행자신호등 유무가 표시되어 있으며, 2025년 9월 검색 기준 총 50,000개소의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30,112개소로 설치가 필요한 비율은 60%

- (1개소당 설치 비용)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1개소당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비용은 2025년 기준 4,927만원으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[표 3] 1개소당 설치 비용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1개소당 설치 비용	5,126	5,229	5,333	5,440	5,5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57억 1,100만원, 2031년 1,313억 4,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,039억 8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설치 수량(a, 개소)	1,477	1,641	1,839	2,078	2,367	9,402
1개소당 설치 비용(b, 만원)	5,126	5,229	5,333	5,440	5,549	—
추가재정소요 (=a×b, 백만원)	75,711	85,808	98,074	113,043	131,345	503,98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 1곳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